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07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 송언석·박준태·구자근

박수영 · 이종욱 · 박성훈

이인선 · 정희용 · 임이자

최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 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분야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은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재정·사업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600억원 이상으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각각 두 배씩 상향시키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00억원"을 "1천억원"으로, "3 00억원"을 "6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 0억원"을 "1천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u>500</u>	<u>1천억</u>
<u>억원</u>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	<u>원</u>
원 규모가 <u>300억원</u> 이상인 신	<u>600억원</u>
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	
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	
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u>500</u>	1천억원
<u>억원</u>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	
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